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해설

2009년 4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발 간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15호, 2009.1.30) 제3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개정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가 2009.2.1부터 추정가격 1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겸업제한이 폐지된 25개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제외한 24개 전문건설업종 공사로 확대 적용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계약의 경우 현재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경쟁입찰 공사에는 적격심사낙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의 적용대상 경쟁입찰 공사는 모두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의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의 규모 및 특별재난지역 공사의 경우에 따라 별지1 부터 별지11의 세부평가기준표 및 별표의 내용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동 평가 기준표 및 평가방식 등은 단독입찰 내지 기존의 공동도급제도를 위주로 그 기본 틀이 짜여 있기 때문에 별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Ⅲ.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2.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구성원 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내용대로 별지 또는 별표의 점수산정방식 일부를 변경 적용하거나 심사항목 중 일부만 평가하고 나머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는 등 평가방법을 다르게 적용하여야만 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14호,2009.1.30) 제3장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중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가미하고 <별지 및 별표>의 내용도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수급체 평가에 직접사용 할 수 있도록 시공경험 평가 점수

산정방식 등을 새로 정리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
여러분들이 실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9년 4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조우현

■ 지방계약법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주요 사항 요약

구분	주요 사항
적용대상 공사	○ 2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공사
공동수급체 구성	○ 구성원수: 5인 이하 ○ 구성원의 최소 참여지분비율: 5%
대표자의 권한 및 참여지분을	○ 주계약자 : 재시공 지시, 자재 및 장비조달의 일원적 관리권한 보유 ○ 주계약자의 의무적 참여지분을 규정은 없으나 공동수급체 평가시 50%로 평가
구성원의 자격요건	○ 주계약자 또는 종합건설업자는 시공에 필요한 자격을 등록해야함 ○ 참여대상 업종을 등록한 전문 건설업자
대가지급	○ 선금지급: 주계약자에게 지급 ○ 대가지급: 주계약자가 신청,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
계약이행 및 하자담보책임	○ 계약이행 :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의 직접시공 의무(각서 제출) ○ 계약 불이행: 보증기관이 1차 책임, 주계약자는 연대책임 ○ 하자담보: 계약이행처럼 각자 분담한 공사 책임, 불이행 시 보증기관 ○ 구성원 간 하자책임 불명확 : 주계약자가 조정 ,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계약자 책임
보증금 납부	○ 원칙: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납부 (예외적으로 일괄납부도 허용)
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분담내용 변경가능(주계약자가 발주자에게 통보)
공동수급체의 공사 시공	○ 구성원 : 직접시공 의무(예외적으로 하도급 허용 -> 주계약자의 합의 및 발주자 승인필요)

■ 주계약자 관리방식 적용 시설공사 업무처리 절차

<p>1. 계약방법의 결정 (계약금액이 70억원 이상 공사는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결정)</p>	<p>① 추정가격 결정 ② 입찰참가자격(면허·등록)검토 ③ 공동도급의 구성 방식 ④ 10년간 실적 평가시 대한 평가기준 규모, 실적인정규모, 실적인정범위 ⑤ 전문업종별 비율,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 비율 ⑥ 기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p>
↓	
<p>2. 입찰공고</p>	<p>①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 - 세부심사기준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계약방법,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시행령 제36조 제14호에 의거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주계약자 관리 방식으로 명시. ② 공사입찰공고 시기 - 현장설명 실시: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공고 - 현장설명 미실시: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 7일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15일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30일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 긴급을 요하는 공사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 규정의 의한 재공고 입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p>
↓	
<p>3. 현장설명(필요시)</p>	<p>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 및 제5항규정의 절차에 따라 현장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 ② 현장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 기준일은 현장 설명일이 된다.</p>
↓	
<p>4. 입찰신청 접수 및 입찰보증금</p>	<p>① 입찰신청서 접수 시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필요한 <별첨양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은 영 제37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해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p>
↓	
<p>5. 입찰 및 개찰</p>	<p>① 예정가격 결정(4개 복수예가의 산술평균) -예정가격 산정: 추정가격->설계가격->기초금액->복수예가->예정가격</p>



6. 낙찰자결정(적격심사낙찰제)	<p>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자는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수해복구공사는 4일 이내)에 제출하게 한다.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수해복구공사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 미비, 오류,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서류보완 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p>② 적격심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담당자는 최저가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평가한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단, 수해복구공사는 4일 이내)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3일(수해복구공사는 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p>③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중 주계약자관리방식 구성원에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참고하여 평가한다.</p> <p>④ 적격심사 결과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에 의한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95점,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92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 -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
-------------------	---



6. 낙찰자 결정	<p>①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p>
-----------	---



7. 이의신청 및 재심사 실시	<p>① 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p> <p>※재심청구 등은 법 제34조제4항 참조</p>
------------------	---



8. 계약체결	<p>① 계약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p> <p>② 계약의 이행보증: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고 당해공사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 세우는 방법 -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	---



9. 계약이행(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주계약자는 직접시공에 참여하지 않으나 시공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만 참여하여도 계약이행으로 본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직접시공하게 하여야 한다(공동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각서를 제출토록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



10.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7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11.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준공금 지급 ② 하자부수보증금 납부 - 영 제71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12. 계약종료	
----------	--



11. 하자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분담한 내용에 따라 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인과 주계약자가 연대하여 하자 담보책임을 지되, 해당 구성원의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하자책임 구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과 관련 있는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해설

목 차

①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요	1
②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와 기존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의 차이점	2
③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효과	8
④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평가 관련규정 (발췌)	11
I. 총칙 : 생략	11
II. 평가기준	11
III.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4
1. 공동수급체 평가	14
2.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	17
3.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20
4. 평가대상 업종이외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경우	21
IV. 평가방법	22
V. 제출서류 등 : 생략	22
VI. 낙찰자 결정	22
VII. 재심사 : 생략	23
VIII.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 생략	23
IX.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 생략	23
X. 기타사항 : 생략	23
⑤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세부 평가기준표	24
<별지 1> ~ <별지 11> 및 <별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Ⅲ-2”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별지 및 별표>의 산정방법 일부를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추가하였음.	
⑥ 부록	99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해설

①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I. 총 칙

II. 평가기준

※ 세부평가 기준표 등은 <별지 및 별표 등>에서 규정

III.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2.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
3.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4. 평가대상 업종이외로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경우

IV. 평가방법

V. 제출서류 등

VI. 낙찰자 결정

VII. 재심사

VIII.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IX.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X. 기타사항

※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 및 ◆로 표시된 부분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경우와 기존의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이 차이가 나는 부분임

②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수급체의 경우와 기존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의 차이점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제정.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단독입찰과 기존의 공동도급제도(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위주로 별지 및 별표에 의한 세부평가 기준표 및 평점방식 등의 기본 틀이 짜여 있다.

이 기준을 시행하던 도중에 기존의 공동도급제도와 특성을 달리 하는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Ⅲ. 공동수급체평가방법에, 2.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구성원 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새로 신설하고, 이외의 사항은 기존의 공동이행방식 내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평가를 위하여 만들어진 “1”의 공동수급체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Ⅲ-2에 규정된 내용은 기존의 평가방법과 달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 평가의 경우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의 세부평가 기준표 및 <별표>등도 단독입찰 내지 기존의 공동수급체 평가목적위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때에는 <별지 및 별표>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만 한다.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간의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때에는 이 기준 Ⅲ. 공동수급체 평가방법“2.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구성원 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별지>의 산식 일부를 바꾸고, 심사항목의 일부만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는 등 평가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별지 및 별표> 일부를 변경 또는 평가방법을 달리하여야 할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별 지> 세부평가 기준표

I.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PQ이외 공사 <별지 1>

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이 다른 부분
1.수행능력 평가 ○ 시공경험분야	44점 (14점)	실적산정 : 평가식이 다름 (실적보완 효과) ※ 전문은 최근3년간(이상) 업종실적만 평가 종합의 기술개발투자 비율만 평가, 전문건설업자는 만점으로 평가함 전문은 일부항목만 평가
○ 기술능력	(15점)	
○ 경영상태	(15점)	
○ 신인도	(±1.2점)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공동수급체 구성원모두 만점으로 평가
3. 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	12점	
4.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II.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별지 2>

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이 다른 부분
1.수행능력 평가 ○ 시공경험분야	30점 (15점)	실적산정 산식이 다름 (실적보완 효과) ※ 전문은 최근3년간(이상) 업종실적으로 평가 전문은 일부항목만 평가
○ 경영상태	(15점)	
○ 신인도	(±1.2점)	
2. 입찰가격 평가	50점	
3. 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	10점	공동수급체 구성원모두 만점으로 평가
4.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III.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 3>

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이 다른 부분
1. 수행능력 평가 ○. 시공경험분야	30점 (15점)	실적산정 산식이 다름 (실적보완 효과) ※ 전문은 최근 3년간(이상) 업종실적만 평가
○. 경영상태 평가	(15점)	
2. 입찰가격 평가	70점	
3. 기타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종합만 평가, 전문은 평가제외

IV.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 4>

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이 다른 부분
1. 수행능력 평가 ○. 시공경험분야	30점 (15점)	실적산정 산식이 다름 (실적보완 효과) ※ 전문은 최근3년간(이상) 업종실적만 평가
○. 경영상태 평가	(15점)	
2. 입찰가격 평가	70점	
3. 기타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종합만 평가, 전문은 평가제외

V.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의 평가기준 <별지 5>

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이 다른 부분
1.수행능력 평가 ○. 시공경험분야	20점 (10점)	실적산정 산식이 다름 (실적보완 효과) ※ 전문은 최근3년간(이상) 업종실적만 평가
○. 경영상태 평가	(10점)	
○. 접근성	(+0.5점)	
2. 입찰가격 평가	80점	
3. 기타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종합만 평가, 전문은 평가제외

VI.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 6>

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이 다른 부분
1.수행능력 평가 ○. 시공경험분야 ○. 경영상태 평가 ○. 접근성	10점 (5점) (5점) (+0.5점)	실적산정 산식이 다름 (실적보완 효과) ※ 전문은 최근3년간(이상) 업종실적만 평가
2. 입찰가격 평가	90점	
3. 기타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종합만 평가, 전문은 평가제외

VII.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 7> : 생략

■ 추정가격 2억원미만 공사는 적용대상이 아님

VIII. 추정가격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 8>

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이 다른 부분
1.수행능력 평가 ○. 시공경험분야 ○. 경영상태 평가 ○. 신인도	30점 (15점) (15점) (±1.2점)	실적산정 산식이 다름 (실적보완 효과) ※전문은 최근3년간(이상) 업종실적만 평가 전문은 일부항목만 적용
2. 입찰가격 평가	50점	
3. 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평가	10점	만점적용
4.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평가	7점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IX.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평가기준 <별지 9>

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이 다른 부분
1.수행능력 평가 ○. 시공경험분야 ○. 경영상태 평가	27점 (15점) (12점)	실적산정 산식이 다름 (실적보완 효과) ※ 전문은 최근3년간(이상) 업종실적만 평가 종합만 평가, 전문은 평가제외
2. 입찰가격 평가	70점	
3. 기타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X.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평가기준 <별지 10>

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이 다른 부분
1.수행능력 평가 ○. 시공경험분야 ○. 경영상태 평가; 5억원이상 공사 5억원미만공사 ○. 시공여유율(5억원미만공사) ○. 접근성(5억원미만공사)	18점 (10점) (8점) (7.5점) (0.5점) (+0.5점)	실적산정 산식이 다름 (실적보완 효과) ※ 전문은 최근3년간(이상) 업종실적만 평가 전문건설업자는 만점 적용 종합만 평가, 전문은 평가에서 제외
2. 입찰가격 평가	80점	
3. 기타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XI. 추정가격 3억원미만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별지 11>

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이 다른 부분
1.수행능력 평가 ○. 시공경험평가 ○. 경영상태 평가 ○. 시공여유율 ○. 접근성	13점 (5점) (7.5점) (0.5점) (+0.5)	실적산정방식이 다름 (실적보완 효과) ※ 전문은 최근3년간(이상) 업종실적만 평가 전문건설업자는 만점적용
2. 입찰가격 평가	85점	
3. 기타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점	종합만 평가, 전문은 평가제외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③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효과

1)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활성화의 필요성

2007.5.1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2008.1월부터 종합과 건설업자간의 겸업 제한이 폐지되는 등 건설산업생산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를 반대하는 핵심적 논거가 되어 왔던 수직적 생산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건설생산체계개편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하여 '09. 2. 1 부터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적용대상 공사를 추정가격 150억 원미만 2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겸업제한이 폐지된 모든 전문건설업종(25개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제외한 24개 업종) 공사로 확대 시행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으며, 이 조치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는 부실공사방지에 효과적이다. 이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관계가 수직적·종속적 관계이던 것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부실공사의 근원으로 지적되어 왔던, 저가하도급과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및 장기어음지급 등 각종 하도급부조리와 불공정거래행위가 사라지고,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부실공사의 위험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원도급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공사수주단계 부터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고 공사대금도 발주자로 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들은 그간의 열악한 하도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제때에 제 값 받고 성실시공에 매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입장에서 볼 때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각 분야별 전문공사의 실제 시공자와 직접 거래관계를 맺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단계하도급구조에서 비롯되는 공사비 누수현상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발주자는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고품격·고품질의 건설공사 완성품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건설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공동도급제도이기 때문에 대·중·소 건설업체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시키는 정책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상호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정책을 이끌어 나아가야 하며, 이런 건설정책의 이상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첩경이 바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 우수전문건설업체를 활용한 적격심사점수 보완효과

종합과 전문건설업자간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가 갖고 있는 위와 같은 제도적 장점 이외에도, 건설공사 수주전략 측면에서 볼 때에도 종합건설업자가 시공실적과 경영상태가 우수한 전문건설업자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면, 가격경쟁력 뿐 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여러 심사항목에서 적격심사점수 만점을 받거나, 부족한 점수를 보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① 시공경험(공사실적) 보완 효과

종합건설업자가 자기의 시공비율을 낮추고 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을 낮추면 시공경험 점수를 만점을 받거나 부족한 점수 차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것은 공사의 유형이나 개별업체의 보유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부록에서 적격심사 세부기준표를 설명할 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기로 하겠다.

② 경영상태 평가점수 보완효과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종합과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을 하므로, 만약 종합건설업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만점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을 줄이면 줄일수록 부족한 점수 보완효과가 커진다.

- 예를 들어 경영상태 평가점수 만점에 1 점이 부족한 종합건설업자가 자기 시공비율을 20%로 낮추고, 만점의 전문건설업체들(시공비율 80%)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부족한 점수를 80%(0.8점)까지 줄일 수 있으므로 만점과의 격차가 0.2점으로 줄어들게 된다.

③ 기술능력 평가점수 및 시공여유율

기술능력 평가점수 및 시공여유율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는 만점으로 평가하므로,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을 줄일수록 평가점수 보완효과는 더욱 커진다.

④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은 정확하게 기재토록 하고, 실제 이행여부까지 확인 한다면 이 심사항목에서 만점을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종합과 전문건설업자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이 항목을 만점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④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평가 관련규정 (발췌)

I. 총 칙 : 생략

II. 평가기준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의 규모에 따라 <별지1>~<별지11>의 세부 평가기준표 및 <별표>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 III.공동수급체 평가방법 2.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구성원 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별지 및 별표의 내용 및 산식 등을 일부를 변경 하거나 일부 항목만 적용하는 등 그 적용 방법을 달리하여야만 한다.

1.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평가하며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지8> 내지 <별지11>에 의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나.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다.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라.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4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다.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바.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6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사.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7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의 경우는 전체 종합건설공사의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 적용함**

2.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당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시공경험 평가방법중 추정가격 10억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이상) 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II에 의한다.

나. 시공경험 평가방법중 추정가격 10억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미만) 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이하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III에 의한다.

다. 최근 10년간 시공경험의 평가는 <별표 1> I에 의한다.

- 라. 기술능력평가는 <별표2>에 의한다.
 - 마.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3> 내지 <별표 3-5>에 의한다.
 - 바. 추정가격 100억이상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 사.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 아.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은 제외) 중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평가는 해당분야의 만점(배점한도)를 적용한다.
4. 평가자료중에서 관련협회에서 신고된 내용을 일정금액미만 단위로 버린 경우로서 버린 금액이 낙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에 의하여 버린 금액을 인정하여 평가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기재출된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6. 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Ⅲ.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별지 및 별표상의 배점표 및 점수 산출방식 등 그 기본골격이 단독입찰 내지 기존의 공동도급제도(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위주로 짜여져 있다. 아래에 규정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공동수급체 평가)는 기존의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가. 시공경험평가

- 1) 최근 10년간 동일실적평가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동일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과 다름
- 2)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지 실적계수에 의한 경우는 당해공사의 평가기준금액(당해공사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해당업종 실적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등급별 경쟁제한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실적은 시공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평가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과 다름
- 3)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지 실적계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

식과 다름

- 4)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평가지 복합업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2) 및 3) 방식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업종별 평가 비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 업종점수가 당해 업종 비율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를 다른 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기술능력 평가 ◆ 주계약자 관리방식과 다름

- 1) 기술능력평가 심사항목중 기술자보유상황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3)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을 평가한다.
- 4)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가 당해 입찰에 제출하는 시공경험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평가한다.
- 5)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에서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라.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재해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바.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당해 입찰에 제출하는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 및 평가

- 1)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로서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평가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평가대상 업종에서 차지하는 시공비율을 기준으로 다시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기초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 3)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종합공사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복합업종의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 입찰금액에 평가대상 업종의 합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상의 심사대상업종(면허)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시공비율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 4) “3)” 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의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 까지는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 5)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등 각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 6)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미만인 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 7)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 8) 공동도급과 단독입찰을 동시에 허용한 경우,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 위의 규정을 시행하던 도중에 기존의 공동도급제도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와 특성을 달리하는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아래의 규정 (2.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을 신설하고 여기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1”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가하며, 이외의 사항은 “1”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또는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한다.

- 1) 전문건설업자가 보유한 업종실적이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Ⅲ-1-가-4)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복합업종 공사가 아닌 경우 포함).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의 합산이 50%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는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을 5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평가는 잔여 50%를 구성원의 시공비율로 나누어 평가한다.(소수점 처리방법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이 안 될 경우 시공비율 환산방법 예시)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40%, 구성원(전문) 갑20%, 을30%, 병 10%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 : 40% → 50%로 환산
- 갑(20%)의 시공비율:잔여50%×갑20%/(갑20%+을30%+병10%)=16.67%
- 을(30%)의 시공비율:잔여50%×을30%/(갑20%+을30%+병10%)=25.0%
- 병(10%)의 시공비율:잔여50%×병10%/(갑20%+을30%+병10%)=8.33%

- 2) 실적계수 산정은 <별지1> 내지 <별지4> 에 정한 방식에서 “1”을 더하여 (추정가격×2.1⇒추정가격×3.1, 추정가격×2⇒추정가격×3) 평가한다.

◆ <별지 8> 및 <별지 9> 의 경우는“1”을 더하지 아니함.

다. 기술능력,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한다.

- 1)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항목만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2)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로서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 축적정도”항목에 대한 평가시에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하되, 실적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규모의 0.5배 이상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처리한다.

◆ **기술능력 : <별지 1>에만 해당되는 항목임, 세부평가방법은 <별지 1> 참조**

◆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 <별지 3>~<별지 7>, <별지 9>~<별지 11>에 해당되는 항목임.**

라. 시공평가 결과 평가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동일실적으로 시공평가 결과를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시 동일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규모의 0.5배 이상 규모의 동일실적을 제출토록 하여 그 실적의 시공평가 결과로 평가하며, 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공동수급체는 0점처리 한다.

◆ **시공평가 결과 : <별지1>의 <별표2>기술능력평가표에 포함된 심사항목이나 현재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있음.**

마.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는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공사<별지 1>, <별지 2> 및 <별지 8 >해당 항목임**

◆ **시공여유율 : <별지 10> 및 <별지 11>에 해당되는 항목임**

바. 신인도 항목에 대한 전문건설업자의 평가는 <별표 4> 신인도평가기준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 **신인도 : <별지 1>,<별지 2> 및 <별지 8>에 해당되는 항목임**

3.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제외)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이 참여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 평가한다.

가. 공사현장이 1개 시·도에 있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1)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이상 20%미만인 경우 : 2%
- 2)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0%이상 25%미만인 경우 : 4%
- 3)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 30%미만인 경우 : 6%
- 4)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30%이상 35%미만인 경우 : 8%
- 5)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35%이상 40%미만인 경우 : 10%
- 6)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0%이상 45%미만인 경우 : 12%
- 7)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5%이상 50%미만인 경우 : 14%
- 8)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16%

나.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2개 지역의 가산비율을 합산한 후 이를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7.5%이상 12.5%미만인 경우 : 2%
- 2)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2.5%이상 17.5%미만인 경우 : 4%
- 3)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7.5%이상 25%미만인 경우 : 6%
- 4)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25%이상인 경우 : 8%

다. 위 '가' 내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소재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등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외로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IV. 평가방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입찰자부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등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최종평가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V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단, 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는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추정가격 50억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1>, <별지2> 및 <별지8>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7-1>에 따른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V-4에 따라 제출하게 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4. 비영리법인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V. 제출서류 등 : 생략

VI.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3.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IV-1~4에 의한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95점, 10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은 92점(이하“적격통과점수”라 한다)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한다.
5. V에 의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V-6의 기한내에 보완 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보완 또는 추가제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VII. 재심사 : 생략

VIII.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 생략

IX.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 생략

X. 기타사항 : 생략

⑤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세부 평가기준표

◆ 이 세부평가 기준표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III.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2.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구성원 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별지 1> ~ <별지 11>의 내용 일부를 실무에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재정리 한 것임.

I.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II.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III.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IV.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4>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V.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VI.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6>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VII.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7>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 특별재난선포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

- VIII. 추정가격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8>
- IX.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9>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 X.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0>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 XI. 추정가격 3억원미만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1>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 별 지 1 >

I.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4점)

○ 시공경험분야(14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심사항목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4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10%이상 : 14.0점 B: 80%이상 : 12.8점 C: 50%이상 : 11.6점 D: 20%이상 : 10.4점 E: 20%미만 : 9.2점	최근10년간 공사실적은주계약자(종합)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평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14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3.1×업종평가비율) 단, 등급별 경쟁제한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추정가격×2.2×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상한은 1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 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종합, 전문공사 업종별)로 구분 적용함 *추정가격×2.1→3.1 *추정가격×1.2→2.2 *종합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의 시공비율을 50%로 환산 적용하고, 구성원(전문)의 시공비율도 잔여 50%를 시공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평가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시공비율 환산방법**

예시)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40%, 구성원(전문) 갑 20%, 을 30%, 병 10%인 경우

- 종합의 시공비율 : 40% → 50%로 환산

- 전문갑의 시공비율(20%): 잔여 50%×갑20%/(갑20%+을30%+병10%)= 16.67%

주 1)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 내용 생략

주 2)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 평가

2-1) 공사실적 인정범위 : <별표1> II에 따라야 함

2-2) 평가대상업종

▶ “평가대상업종”이란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평가하고자하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등

▶ 평가대상업종은 동일법령내(內)의 업종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의하여 최근3년간 실적을 평가해야 함. 단, 기초금액기준 업종평가 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일부 업종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종을 기준으로 업종평가 비율을 다시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실적계수 산정시 적용하는 업종평가비율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적용한다.

▶ 서로 다른 법령상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법령내(內)의 업종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른 법령상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각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예) 토목, 조경 및 전기공사 업종이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가능

2-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에 대한 실적평가의 경우 위“업종평가비율”은 “시공비율”로 보고 평가한다.

○ 기술능력(15점)

- <별표 2>의 기술능력평가표에 의한 평점합계×15/35

◆ **종합과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종합 : <별표2>의 기술능력 심사항목이 가~마(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중 마. 기술개발투자 항목만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가~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이전까지 배점 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전문 : 기술개발 투자항목만 심사하고 나머지 항목은 배점한도(만점)으로 평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에서 조사통보한 평균비율이 없기 때문에 전문은 모두 만점으로 평가

○ 경영상태(15점)

- 점수 = <별표 3-1>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합계 × 15/35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우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선택

◆ 종합과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4>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종합과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후 합산

· 종합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전문 : <별표 4> 신인도평가기준 제2호, 제3호에 대해서만 평가

2. 입찰가격 평가(30점) : 공동수급체의 입찰가격

$$○ 30 -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함.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2점) : 배점한도(만점) 적용

◆ 종합과 전문간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만점적용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 ◆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집계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노무비 및 제경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 별 지 2 >

Ⅱ.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적용

심사 항목	실적 사항	점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 입찰공사 (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이상 : 14.3점 B: 70%이상 : 12.9점 C: 40%이상 : 11.4점 D: 20%이상 : 10.0점 E: 20%미만 : 8.6점	95%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최근10년간 실적은 종합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평가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추정가격x2.0→3.0 ◆종합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인 안될경우는 50%로 환산적용하고 전문도 환산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 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3.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5%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 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등급별 경쟁제한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2×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상한은 1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 함 ◆추정가격x2.0→3.0 추정가격x1.2→2.2 ◆종합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인 안될경우는 50%로 환산적용하고 전문도 잔여 50%를 시공비율에 따라 환산 적용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 안 될 경우 시공비율 환산방법:**
<별지 1>의 예시 참조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 경영상태(15점)

- <별표 3-2> 경영상태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 15/21

◆ **종합과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4>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종합과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종합 : < 별표 4 > 신인도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전문 : < 별표 4 > 신인도 평가기준 제2호, 제3호에 대해서만 평가**

2. 입찰가격 평가(50점)

$$○ 50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0점) : **배점한도(만점) 적용**

◆ **종합과 전문간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만점 적용**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별표7>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집계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노무비 및 제경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Ⅲ. 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심사 항목	실적 사항	점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 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90%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 최근 10년간 실적은 종합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평가
	나.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3.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10%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추정가격×2.0-3.0 *종합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 50%로 환산적용하고, 전문도 환산적용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시공비율 환산방법 : <별지1>의 예시 참조**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1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 안 될 경우 종합의 시공비율을 50%로 환산적용하고, 전문도 잔여 50%를 시공비율에 따라 환산 적용**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 안 될 경우 시공비율 환산방법 : <별지1>의 예시 참조**

가. 종합건설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10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나. 전문건설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60%이상	6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1-2. 경영상태 평가(15점)

점수 = <별표 3-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점수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2. 입찰가격 평가(70점) : **공동수급체의 입찰가격**

○ 평점 = $7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하고 전문은 평가에서 제외

-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1인이 보유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며, 토목건축공사업종 보유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공사입찰에 참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한다.)
- 다만,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충족하지 않거나 충족하더라도 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종합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주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는 그 전문건설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별 지 4 >

IV. 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심사항목	실적사항	점수배점	배점비율	비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90%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적용 *최근 10년간 실적은 종합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평가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8×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10%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추정가격×1.8→2.8 *종합의 시공비율이 50%이상 안될 경우 50%로 환산적용하고, 전문도환산적용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 안될 경우 시공비율 환산방법 : <별지1>의 예시 참조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1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15점)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 안될 경우 종합의 시공비율을 50%로 환산적용하고, 전문도 잔여 50%를 시공비율에 따라 환산**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 안될 경우 시공비율 환산방법 : <별지1>의 예시 참조**

가. 종합건설공사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80%이상	160%이상	140%이상	14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나. 전문건설공사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60%이상	6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1-2. 경영상태평가(15점)

점수 = <별표3-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2. 입찰가격 평가(70점) : **공동수급체의 입찰가격**

○ 평점 = $7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하고 전문은 평가에서 제외**

◆ **세부내용 :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참조**

< 별 지 5 >

V.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 안될 경우 종합의 시공비율을 50%로 환산적용하고 전문도 잔여 50%를 시공비율에 따라 환산적용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 안될 경우 시공비율 환산방법 : <별지1>의 예시 참조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점 수		10.0	9.0	7.0	6.0

-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 2) 실적인정범위 : <별표1> III에 따라야 함
- 3) 실적인정기간 :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 + 최근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
- 4) 평가대상업종 :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2)와 같음

1-2.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3-4>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1-3. 접근성(+0.5점)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추정가격 5억원이상 종합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평가제외(0점적용)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에서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 내에 관련 업종의 등록소지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평가제외(0점적용)
 - 가산점(+0.5)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접근성 점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 인접 시·군이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인 경우 인접시군으로 보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공동수급체의 입찰가격

$$\circ 80-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하고 전문은 평가에서 제외

◆ 세부평가방법 :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참조

< 별지 6 >

VI.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시공경험평가(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승)
-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 안될 경우 종합의 시공비율을 50%로 환산적용하고, 전문도 잔여 50%를 시공비율에 따라 환산적용
-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 안될 경우 시공비율 환산방법: <별지1>의 예시 참조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주) <별지5>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4)와 같음

1-2. 경영상태평가(5점)

<별표3-4>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5/10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1-3. 접근성(+0.5점)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세부평가방법 : <별지5> 1-3 참조**

2. 입찰가격 평가(90점) : **공동수급체의 입찰가격**

○ $90-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하고 전문은 평가에서 제외**

◆ **세부평가방법 :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참조**

< 별 지 7 >

VII.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생략

※ 추정가격 2억원미만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적용대상공사가 아님

< 별 지 8 >

VIII 추정가격 7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 시공경험(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적용

심사 항목	실적 사항	점수 배 점	배점 비율	비 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경쟁 입찰 공사 (15점)	가.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 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이상 : 14.3점 B: 70%이상 : 12.9점 C: 40%이상 : 11.4점 D: 20%이상 : 10.0점 E: 20%미만 : 8.6점	95%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 *최근10년간실적은 종합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평가
	나.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등급별 경쟁제한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1.2×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상한은 1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5%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종합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인 될 경우에는 50%로 환산적용하고,전문도 잔여 50%를 시공비율에 따라 환산적용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 공사(15점)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공사 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 함 *종합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인 될 경우에는 50%로 환산적용하고,전문도 잔여 50%를 시공비율에 따라 환산적용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 안 될 경우 시공비율 환산방법 :**
<별지1>의 예시 참조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 **경영상태(15점)**

- <별표 3-2> 경영상태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 15/21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4>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종합 : < 별표 4 > 신인도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전문 : < 별표 4 > 신인도평가기준 제2호, 제4호에 대해서만 평가**

2. **입찰가격 평가(50점)**

○ $50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0점) : 배점한도(만점) 적용**

◆ **종합과 전문간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만점적용**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7점)

○ <별표7>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집계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상의 노무비 및 제경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3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3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3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2점

주) 1.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2.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별 지 9 >

IX.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7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심사항목	실적사항	점수배점	배점비율	비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 실적 합계 (주1참조)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90%	가.항목과 나.항목은 각각 계산하여 합산적용 * 최근10년간 실적은 종합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평가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주2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추정가격×1.8×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10%	종합건설공사와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포함 * 종합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종합의 시공비율을 50%로 환산적용하고, 전문도 잔여 50%를 시공비율에 따라 환산적용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 안될 경우 시공비율 환산방법 : <별지1> 의 예시 참조

주)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2)와 같음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1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15점)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 안될 경우 종합의 시공비율을 50%로 환산적용하고, 전문도 잔여 50%를 시공비율에 따라 환산적용**
-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 안될 경우 시공비율 환산방법 : <별지 1>의 예시 참조**

가. 종합건설공사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80%이상	160%이상	140%이상	14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나. 전문건설공사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60%이상	6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 주 1)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 2) <별지1>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2)와 같음

1-2. 경영상태평가(12점)

점수 = <별표3-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12/15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2. 입찰가격 평가(70점) : **공동수급체의 입찰가격**

$$\text{○ 평점} = 7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하고 전문은 평가에서 제외**

◆ **세부평가방법 : <별지 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참조**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3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3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3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2점

주) 1.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2.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별 지 10 >

X.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8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승)
-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 안될 경우 종합의 시공비율을 50%로 환산적용하고, 전문도 잔여 50%를 시공비율에 따라 환산적용
-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 안될 경우 시공비율 환산방법 : <별지 1>의 예시 참조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주) <별지5>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4)와 같음

1-2. 경영상태평가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이상 공사(8점)

- <별표 3-4>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8/10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7.5점)

- <별표 3-4>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7.5/10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1-3. 시공여유율(0.5점) : 추정가격 5억원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

◆ **종합만 평가하고, 전문은 배점한도(만점) 적용**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 0.5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1건 : 0.4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2건 : 0.2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3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 1-4. 접근성(+0.5점) : 추정가격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세부평가방법 : <별지5> 1-3 참조**

2. 입찰가격 평가(80점) : **공동수급체의 입찰가격**

○ $80-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하고 전문은 평가에서 제외

◆ 세부평가방법 :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참조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주) 1.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2.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별지 11 >

XI. 추정가격 3억원미만의 재해복구공사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3점)

1-1. 시공경험평가(5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에 해당업종 평가비율을 곱한 금액 대비 최근 3년이상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함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업종평가비율 : 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

-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 안될 경우 종합의 시공비율을 50%로 환산적용하고, 전문도 잔여 50%를 시공비율에 따라 환산적용**
-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비율이 50% 이상이 안될 경우 시공비율 환산방법 : <별지 1>의 예시 참조**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주) <별지5>의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의 주1)~주4)와 같음

1-2. 경영상태평가(7.5점)

<별표3-4>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7.5/10

-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1-3. 시공여유율(0.5점)은 사업자별로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종합만 평가하고, 전문은 배점한도(만점) 적용**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 0.5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1건 : 0.4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2건 : 0.2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가 3건 이상 : 0점
- ※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 사업·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1-4. 접근성(+0.5점)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세부평가방법 : <별지5> 1-3참조**

2. 입찰가격 평가(85점) : **공동수급체의 입찰가격**

$$○ 85-20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text{입찰가격점수}$$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10점)

: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하고 전문은 평가에서 제외**

◆ **세부평가방법 :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참조**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2점)

-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 2점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업체의 경우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이상인 자 : 2점
 -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해당지역 소재기간이 90일 미만인 자 : 1점

주) 1.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2. 해당지역에 최초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는 만점(배점한도)으로 평가한다.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10점)

○ 세부평가방법 : <별표 8>

◆ **종합, 전문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별 표 목 록

<별표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별표2>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PQ이의 공사 기술능력평가표

<별표3> 경영상태 평가방법

- <별표3-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PQ이의 공사
- <별표3-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공사
- <별표3-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
- <별표3-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

<별표4>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별표5> 하도급관리계획서 :

<별표6>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별표7>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별표7-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별표8>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및 영업활동기간 항목 평가방법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I.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서 범위를 정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2에 의한 증명을 원칙으로 한다.

- ①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 ② 국외공사실적인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 또는 증명서에 의한다.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 하도급공사 :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라. 별첨양식 2에 의한 실적증명이 곤란하거나 실적내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일정한 서식을 정하여 실적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공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단, 면세사업자 이거나 부가가치세가 관련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를 제외할 수 있음

- 나.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 (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도급액 및 관급·지급자재대금)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 라.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 마. 대한민국외(外)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 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제출
- 바.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 서류 제출

4.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 ① 심사의 대상은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규모)으로 한다.
- ② 시공실적 증명서와 실제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실제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한다.
- ③ 심사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본 심사기준의 증명방법과 상이하거나 또는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 불명확 등이 있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한 뒤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 ④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인정기준과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 ⑤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시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회사에 있다.

나. 시공실적 내용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규모 인정방법

▶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제3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상의 동일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체)을 말한다.

② 공동도급으로 계약하여 시공한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의 방법으로 시공한 경우가 아닌 경우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분리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입증서류(공동수급체의 시공내용을 기재하고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 발주기관의 분리시공 승인서류 등)를 제출하면 실제 시공한 내용으로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건에 대하여 ㉠의 실적인정방법과 ㉢의 방법으로 중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지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예 : 당해실적이 경간 50m, 길이 200m의 교량이고 지분율 20%일 때 당해지분 실적이 40m이므로 경간 50m 실적은 불인정함).

㉤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시공한 실적이 당해 적격심사기준의 동일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과거의 공동수급체 구성상태가(구성원 및 시공

비율 등) 동일한 상태로 다시 입찰에 참가한 경우 1건의 실적으로서 당해 실적 전체를 그 공동수급체 실적으로 그대로 인정한다.

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2)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3)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㉕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 인정

- ㉔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 ㉔ 철강재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공사액을 당해교량 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동교량 실적에 대한 규모(량)는 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이 당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규모(량)에 곱하여 산정한다.
- 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받아 시공한 부분만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④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 인정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하였을 때는 신규로 발주되는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는 보수·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⑤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 전체 연차의 시공분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체)를 1건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 증명서(별첨양식 2)의 주 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⑥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방법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IX-2 또는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⑦ 시공자격 유·무에 따른 실적 인정

- ①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 ②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⑧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 건설공사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당해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등록업종(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공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중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등의 업체가 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경우로서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II.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 관련협회(이하“관련협회”라 한다)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당해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관련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당해업체가 관련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내용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 협회에 있다.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 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또는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기타 실적인정기준

- 가.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은 I- 2를 준용하되 발주기관의 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 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의 인정은 I- 4 - 나 - ② - ㉠의 방식에 의하여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예 :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Ⅲ.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1. 관련협회에서 실적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증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의 준공이 아닌 전체구조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함)된 공사의 실적(관련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실적을 중복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된다.(세부내역 확인)

2.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제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연도단위로 협회신고와 미신고가 혼재한 경우에는 협회 증명상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다만, 1회계연도 내(內)의 실적에 대하여 관련협회에 실적신고시 누락신고한 경우의 당해 1개 연도실적은 관련협회증명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또는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협회에서 당해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4. 기타 실적인정기준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동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실적증명방법은 I-2를 준용하되 발주기관의 관급 및 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실적의 인정은 I-4 나 - ② - ㉠의 방식에 의하여 업종실적을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전문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종(예 :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평가대상 업종으로 보아 평가한다.

IV. 붙임

가.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 별첨양식 1

나.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 별첨양식 2

다.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 명세서 : 별첨양식 3

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 별첨양식 3-1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 및 확인요령

I.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 자치단체

1.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기준 적용 철저

- 가.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행정안전부 예규) 세부기준의 증명방법에 따라 발급한다.
- 나.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은 회계·계약서류, 공사대장 등 각종 공부와 준공조서를 기초로 하여 발급하되,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한다.
- 다. 사실조사를 통하여 발급할 경우 조사이유·조사방법·조사결과와 조사자를 기록에 남겨 사실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2. 시공실적 증명서의 발급

가.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창구의 일원화

시공실적발급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 및 부서의 확인·협조를 받을 수 있다.

나.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현황 관리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시 발급대장에 반드시 기재하고 발급번호 부여, 간인, 날인 등으로 확인절차를 병행하여 시공실적이 위조·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발급하며 발급된 사본은 10년 동안 보관해야 함.

라.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대장은 증명발급에 따른 일계와 월계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

마.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 또는 천공을 한다.

3. 허위실적증명서 발급 사전예방 철저

- 가.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은 증명서 발급 양식에 따라 시공자가 증명서 발급을 직접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되 제출된 내용을 공사대장 등 관련 공부와 세밀히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 나. 동일실적 내용을 한꺼번에 여러장 발급하는 경우 시공업체에서 제출된 증명서식을 발주처에서 직접 복사본(Copy본)을 생산하여 발급한다.
- 다. 실적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위조를 방지한다.

4. 실적증명서 발급의 일관성 유지

- 가. 시공실적 증명서식에 의해서만 발급한다.
 - 담당자 명의의 확인서 형식에 의한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하며 발급 일 기준 현재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기관장의 직인을 사용해야 한다.

5.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처리 관련 규정등에 의한다.

II. 시공실적 증명서에 의해 실적을 심사하는 자치단체

- 1. 실적을 심사하는 기관에서는 실적내용에 모순, 오류, 불명확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에 즉시 사실관계를 조회하여야 한다.
- 2. 발급된 시공실적증명서가 허위, 조작 등으로 밝혀졌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 외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별 표 2 >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Q이외 공사의 기술능력 평가표(3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0.0	A. 3.6이상 B. 2.4이상 C. 1.2이상	10.0 8.0 6.0
	2) 일반 기술자	9.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9.0 7.2 5.4
	3) 시공지원 기술자	5.0	A. 4인이상 B. 4인미만	5.0 3.0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4) 신기술 개발	0.5	A. 2건이상 B. 1건	0.5 0.3
	5) 신기술 활용실적	1.5	A. 60억원이상 B. 6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5 1.4 1.2 1.1
다. 시공평가 결과	6) 시공평가점수	3.0	A. 90점이상 B. 80점이상 C. 75점이상 D. 70점이상 E. 70점미만	3.0 2.8 2.6 2.4 2.2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7) 적격심사시 제출한 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2.0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 10년이내 시공실적	2.0 1.8 1.6 1.4
마.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4.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4.0 3.6 3.2 2.8 2.4

◆ 본문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수급체의 경우 종합만 평가하고, 전문은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항목만 심사하고 나머지 항목은 배점한도 (만점)로 평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종합건설업자의 경우도 < 별표 2 > 주8에 의거 위의 심사항목중 마. 건설부

- 문 기술개발 투자항목만 심사하고 나머지 항목은 배점한도(만점)를 적용
 - 전문건설업자의 경우는 관련협회에서 조사하여 통보한 평균비율이 없기
 때문에 상기 심사항목을 모두 만점으로 적용

주1) ~ 5) : 생략

6)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7) 공동도급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아래와 같이 한다.

○ “가”항목의 기술자 보유평가에 있어서,

- 해당공종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주)1-1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반기술자와 시공지원기술자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자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 소숫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8) 기술개발투자비율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이전까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경 영 상 태 평 가 방 법

I. 공통사항

1. 경영상태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인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중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선택(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선택한다. 이하 같다.)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내용을 평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본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 심사자료 제출시 평가방법을 미리 선택한 후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II.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당해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첨양식 6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받

주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계산시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함.
5.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단,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하며, 당해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함
6.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7.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8.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제5호에 의한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첨 양식6”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최종취득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 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한다.

Ⅲ.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에는 <별표 3-1> “나”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 별 표 3-1 >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P.Q이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35점)

가. 재무비율 평가에 의한 경우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8.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8.0 7.2 6.4 5.6 4.8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8.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8.0 7.2 6.4 5.6 4.8
다.최근년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총자산)	3) 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4.0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4.0 3.6 3.2 2.8 2.4
라.최근년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4) 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 상배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4.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4.0 3.6 3.2 2.8 2.4
마.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5)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 한 해당업체 비율	3.0	A.100%이상 B. 75%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등 급	평 점
바.최근년도 총자산 순이익율 (당기순이익/총자산)	6) 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1.0 0.9 0.8 0.7 0.6
사.최근년도 총자산 대비 영업 현금흐름 비율(영업활동 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7) 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 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아.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8) 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3.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4 2.1 1.8
자.영업기간	-	2.0	10년이상 10년미만~5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	2.0 1.8 1.6 1.4

- 주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
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
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
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 4)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리고(소수점 둘째자리까지를) 산정한다. 이 경우 총자산회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 수치에 소수점 셋째자리를 버린 후 다시 “회”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6)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6-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한다.

6-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7)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4.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3.6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3.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3.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2.3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0.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5.0

※ 주 :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별 표 3-2 >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21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다.최근년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3)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5.0 4.5 4.0 3.5 3.0
라.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	2.0 1.9 1.8

주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 4)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리고(소수점 둘째자리까지를) 산정한다. 이 경우 총자산회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 수치에 소수점 셋째자리를 버린 후 다시 “회”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 6)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 6-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한다.
 - 6-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7)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 별 표 3-3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가.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50억원미만 30억원이상)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0 0.9

나.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15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0억원미만 3억원이상)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8	A. 50%미만	A. 100%미만	8.0
			B. 75%미만	B. 130%미만	7.2
			C. 100%미만	C. 160%미만	6.4
			D. 125%미만	D. 190%미만	5.6
			E. 125%이상	E. 190%이상	4.8
나. 최근년도 유동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A. 100%이상	7.0
			B. 120%이상	B. 90%이상	6.3
			C. 100%이상	C. 80%이상	5.6
			D. 70%이상	D. 70%이상	4.9
			E. 70%미만	E. 70%미만	4.2

주) : “가”, “나”에 공통적용

-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 함.
-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 4)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림.

5)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 3>에 의한 공인 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함

6) “나”의 평가등급 중 ‘A’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7) “나”의 평가등급 중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8)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8-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한다.

8-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9) 상기사항이외는 <별표 3>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 별 표 3-4 >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표(10점)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5.0
			B. 130%미만	4.5
			C. 160%미만	4.0
			D. 190%미만	3.5
			E. 190%이상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5.0
			B. 90%이상	4.5
			C. 80%이상	4.0
			D. 70%이상	3.5
			E. 70%미만	3.0

- 주)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에는 <별표 3>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나 설립일(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평가함
-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 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 함.
- 3)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 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 4)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를 버림.
- 6) 종합건설공사 이외(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 전문·설비 등)의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새로 설립된 업체의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 평가가 가능함
- 7) 상기사항 이외는 <별표 3>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 별 표 3-5 >

비영리법인의 추정가격 100억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표

신 용 평 가 등 급			금 액 별 평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이상	추정가격 50억미만 10억이상	추정가격 10억미만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1.0	15.0	1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0.1	14.1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9.2	13.2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8.3	12.3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7.4	11.4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6.5	10.5	9.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6	9.6	9.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4.7	8.7	8.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3.8	7.8	8.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2.9	6.9	8.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2.0	6.0	8.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5.0	8.0

※ 주 :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별 표 4 >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

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1. 최근 1년간 건설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0	평점 90점이상인 자
	+2.2	평점 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1.4	평점 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0.5	평점 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0.5	1회 받은자
	-1.0	2회 이상 받은 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벌금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6.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2.0	평균환산재해율 0.4배이하
	+1.0	평균환산재해율 0.7배이하
	+0.5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 종합, 전문간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평가는 상기 심사기준 제2호, 제3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주 1) ~8) : 생략

< 별 표 5 >

하도급 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수급 예정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제금액)	비고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OO건설(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OO건설산업(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 공 사	1 식	1,500,000	1,320,000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B/A) : 30.0%				

※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예시”임

위와 같이 0000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귀 하

< 별표 6 >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고
	등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①하도급 비율	A : 40%이상 B : 30%이상	5 4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제외) 대비 하도급 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 예시에서 (B/A×100)
②하도급할 공사의 총금 액(B)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별표5)의 예시에서 (C/B×100)
③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10%이상 B: 10%미만	1.0 0.5	1.0 0.5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6-1>에 의함
계		12	10	

주1) 심사항목 ①, ②에 대한 평가방법

-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2)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③에 대한 평가방법

- (1) 20억원이상 관급공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
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2)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1>에 의한다.
- (3) 본 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직불실적에 한하
여 평가한다.

주3)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지불실적평가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지불계
획이 있는 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비고”란에 하수급예정자와 직불계획금액을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동 하도급대금지불계획금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20%이상인
때에는 0.5점을 가산부여하여 평가한다.(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
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별표 6-1 >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1. 평가대상 관급공사

○ 최근연도 신규계약한 계약금액 20억 원(최초계약금액 기준)이상 관급공사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를 말한다

※ 최근연도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증명을 발급 시행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1년)를 말함

2. 평가방법

① 단독입찰인 경우

$$P = \frac{\text{적용직불건수의 합}}{M} \times 100(\%)$$

- P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비율

- M =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

- 적용직불건수의 합 = $\sum_{n=1}^M Dn/Sn$

- S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건수

- D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
(계산실례)

n	평가대상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건수(Sn)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Dn)	적용직불건수 (Dn/Sn)
1	○○건설공사	3	1	1 / 3 = 0.33333
2	△△건축공사	2	2	2 / 2 = 1.00000
3	□□토목공사	4	0	0 / 4 = 0.00000
합계	M = 3			적용직불건수의 합 = 1.33333

$$P = 1.33333 / 3 \times 100(\%)$$

②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인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M)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건수 대비 각각의 적용직불건수의 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한 수의 비율로 평가

③ 점수산정 : 10% 이상시 1점, 10% 미만시 0.5점

※소수점처리방법

- 최종 평가비율(백분율) 산정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각 평가단계에서는 소수점 여섯째자리에서 버림

3. 실적 인정범위

① 하도급 직불합의(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이루어진 공사

-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계약이 여러건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만 직불 합의가 이루어지면 직불 합의한 건수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

예) 원도급자 A가 하도급자 B, C, D에게 하도급 계약한 경우로서 B사에게만 직불합의를 한 경우에는 $1건 \div 3 = 0.333333$ 건이 됨

②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원도급계약체결후 당해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합의한 경우이어야 함.

③ 과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

※1건의 공사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자 여러업체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만 직불실적이 이루어지면 직불업체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 산정

4. 평가자료 확인방법

①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도급직불건수, 총하도급계약건수 및 관급공사 계약건수가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하여 그 확인서에 의하여 평가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후 중도에 직불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자는 당해사실을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대한건설협회에 통보 하며 동 실적은 직불실적에서 제외함

② 대한건설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내용이 틀린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 20억원 이상 관급공사 건수 및 하도급계약건수

- 업체별로 최근연도 계약한 20억원 이상 공사목록 및 하도급계약 내역을 제출받음(별첨양식)
- 발주자는 국토연구원 등의 전산망(Kiscon)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 확인

㉡ 하도급직불실적 확인

- 입찰참가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증빙서류는 직불합의한 발주기관으로부터 <별첨양식 8-2>에 의한 증명서 발급

-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자료(하도급대금 직불합의후 직불이 이행되지 않은 건수를 직불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포함)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약서 징구

5. 직불합의가 없어도 직불실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예외 인정

- 최근연도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로서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연명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별첨서식)한 경우 직불실적으로 인정
 - 이 경우에도 해당계약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되 원도급자 1개 업체에 하도급계약이 여러건인 경우 해당 비율만큼만 실적건수로 인정함

예)1건의 공사중 하도급자 A, B, C 중 C 업체만 직불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 $1건 \div 3 = 0.33333$ 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A, B 업체는 일반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6. 최근연도 20억원 이상 관급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으로 처리
7. 협회 신고 및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제 확인된 내용에 따라 평가(이 경우에도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8. 원도급자의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의 경우 <별표 1> I-3-나-⑧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방법을 준용
9.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이 기준에 따라 대한 건설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별첨양식8-2>, <별첨양식8-3> 등을 첨부하여 <별첨양식8>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수급인, 하수급인 및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사본에 발주자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및 관련협회의 서면확인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별 표 7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 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7-1)

2. 노무비 평가

○ 노무비 적용기준을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 노무비율 =
$$\frac{\text{직접노무비} + \text{간접노무비}}{\text{입찰금액}}$$

○ 배점 및 평가기준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8점,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7점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8	7	6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을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 배점 및 평가기준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0%이상	기준율의 80%미만
기타경비	2	2	1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1	2	1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기타경비	1	1	0.5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0.5	1	0.5

- 주) 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을 산출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 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 별 표 7-1 >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사 종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댐축조공사 ③발전소 건설공사 ④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 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 건설공사 ⑤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정수장공사 ⑦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공사 ②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③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기타 공사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 별 표 8 >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및 영업활동기간 항목 평가방법

I.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평가방법

1. 해당지역이란 발주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2.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다만, 기술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감점처리한다.
4.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에서 이전해 온 업체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감점처리한다.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 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처리할 수 있다.
6.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분담내용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산정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II.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방법

1. 해당지역이란 발주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를 말한다.
2. 재난발생일이 여러일인 경우 최초의 재난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지역소재 기준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합병, 사업양도양수,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상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

비율(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분담내용을 기준으로 분담비율 산정)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역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에 사전 명시한 경우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이 경우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배점한도) 부여)

⑥ 부록

- 목 차 -

1. 입찰공고문<예시>

2. 공사규모별 적격심사표 <예시>

※ 다음의 예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www.ksca.or.kr) 및 대한건설정책연구원(www.ricon.re.kr) 홈페이지에서 엑셀파일로 다운받아서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2-1 시공실적으로 제한한 공사

2-1-1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

2-1-2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미만 시공

2-1-3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이상 시공

2-1-4 5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미만 시공

2-1-5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이상 시공

2-2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공사

2-2-1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미만 시공

2-2-2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이상 시공

2-2-3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미만 시공

2-2-4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이상 시공

2-2-5 50억원 미만 20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미만 시공

2-2-6 50억원 미만 20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이상 시공

2-2-7 20억원 미만 10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미만 시공

2-2-8 20억원 미만 10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이상 시공

2-2-9 10억원 미만 3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미만 시공 - 4년 미만

2-2-10 10억원 미만 3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미만 시공 - 4년 이상

2-2-11 10억원 미만 3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이상 시공 - 4년 미만

2-2-12 10억원 미만 3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이상 시공 - 4년 이상

2-2-13 3억원 미만 2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미만 시공 - 4년 미만

2-2-14 3억원 미만 2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미만 시공 - 4년 이상

2-2-15 3억원 미만 2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이상 시공 - 4년 미만

2-2-16 3억원 미만 2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이상 시공 - 4년 이상

1. 입찰공고문<예시>

※ 입찰공고문<예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입찰공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 공고 제 2009 - 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지구 도로개설공사
- 공사현장 : ○○시 ○○동 810번지선(○○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공사내용 : B=25m, L= 4km
- 공사에정금액 : 3,960,000,000원(추정가격 3,600,000,000원 + 부가세 360,000,000원)
- 기초금액 : 3,96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등록업자로서,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 2009.04.08 18:00
- 설계서상 전문건설업종의 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입찰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아래 전문건설업종비율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되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찰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 토공사업 25%, 포장공사업 15%,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10%, 기타부대공 10%
-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자는 상기전문건설업종의 비율 범위내에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 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6. 설계서 열람 - 필요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시

- 열람장소 : ○○도 건설과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전산디스크 포함)는 현장설명 시 열람하거나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09. 04. 13. 09:00 ~ 2009. 04. 16. 18:00
 - ※입찰서 제출기간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9. 04. 17. 10:00
- 개찰장소 : ○○도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추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한자중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종합평점 95점미만일 때는 차순위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점수가 65점미만인 입찰자의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쟁입찰공사를 토대로 같은 기준의 Ⅲ.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중 2.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구성된 중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경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자를 선정하고, 그래도 동일 점수일 때에는 추천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5조) 제6장 공사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 납부각서 제출로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로서 같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적격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확인서, 최근 3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증명서, 기술자보유현황(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만 제출)

- 기타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요구서류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원, 국민연금보험료 : 원

13.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동계약운영요령,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나라장터(G2B)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설계서, 시방서 등
-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1.5%에 해당하는 00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시청 회계과(000-000-000, 홍길동)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시청 건설과 (000-000-000, 홍서범)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call center(1588-0800)
 - 본 공고안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시설』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시설』 (기초/예비금액조회,개찰결과조회,최종낙찰자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call center로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09년 4월 1일

○○도 경 리 관

2. 공사규모별 적격심사표 <예시>

2-1 시공실적으로 제한한 공사

2-1-1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한 공사 (100억 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11,00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 출 기 초				점수
총 점	100					92.00
1.수행능력 평가	44					44.00
1)시공경험	【14】	가.최근 10년간 당 해공사와 동일한 종 류의 공사실적 인정 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10%이상 : 14.0점 B: 80%이상 : 12.8점 C: 50%이상 : 11.6점 D: 20%이상 : 10.4점 E: 20%미만 : 9.2점	점수 등급 비율(%) 실적(km) 기준규모(km) A사실적(km)	14.00 A 250.00 6.00 2.40 6.00	14.00
2)기술능력점수	【15】	별첨(1)점수 × 15/35				15.00
3)경영상태평가	【15】	별첨(2)점수 × 15/35				15.00
4)신인도 평가	【±1.2】	별첨(3)점수 × 40/100				해당없음 0.00
2.입찰가격평가	【30】	별첨				22.00
3.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12】	별첨				12.00
4.자재및인력조달 적정성평가	【14】	별첨				14.00

2-1-2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미만 시공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한 공사 (100미만 50억 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6,60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출기초				점수
총 점	100					95.00
1.수행능력 평가	30					30.00
1) 시공경험	【15】	가.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 위 및 인정규모에 해 당되는 공사실적 합 계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점수	14.30	15.00
			A: 100%이상 : 14.3점 B: 70%이상 : 12.9점 C: 40%이상 : 11.4점 D: 20%이상 : 10.0점 E: 20%미만 : 8.6점	등급 비율(%) 실적(km) 평가기준규모(km) A사실적(km) B사실적(km)	A 160.00 4.80 3.00 4.80 0.00	
		나. 당해공사와 동일 한 평가대상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 금액의 합계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 점수=실적계수×0.7 × 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업종별 최근 3년 간 실적÷(추정가격×3.0×업 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 공동수급체별 시공비율 산 식 별첨	점수 토목 점수 토공 점수 상하수도 점수 조경식재 점수	0.70 0.35 0.10 0.20 0.05	
3) 경영상태평가	【15】	별첨(2)점수 × 15/21				15.00
4) 신인도 평가	【±1.2】	별첨(3)점수 × 40/100				0.00
2. 입찰가격평가	【50】	별첨				45.00
3.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10】	배점한도 적용				10.00
4. 자재및인력조달 적정성평가	【10】	별첨				10.00

실적계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	시공비율	추정가격	차등계수	업종평가비율 (환산)	실적계수		
토목	A사	10,000,000,000	0.30	6,600,000,000	3.0	0.50	1.01	능	1.00
토공	B사	3,000,000,000	0.20	6,600,000,000	3.0	0.14	1.06	능	1.00
상하수도	C사	6,000,000,000	0.40	6,600,000,000	3.0	0.29	1.06	능	1.00
조경식재	D사	2,000,000,000	0.10	6,600,000,000	3.0	0.07	1.41	능	1.00

업종별 점수

업종	실적계수	업종평가비율(환산)	배점	점수
토목	1.00	0.50	0.70	0.35
토공	1.00	0.14	0.70	0.10
상하수도	1.00	0.29	0.70	0.20
조경식재	1.00	0.07	0.70	0.05
				-
계				0.70

실제입력해야하는 부분

2-1-3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이상 시공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부적격	시공 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 (100미만 50억 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6,60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 출 기 초				점수
총 점	100					94.87
1. 수행능력 평가	30					29.87
1) 시공경험	【15】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 한 종류의 공사 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 적 합계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점수	14.30	14.87
			A: 100%이상 : 14.3점 B: 70%이상 : 12.9점 C: 40%이상 : 11.4점 D: 20%이상 : 10.0점 E: 20%미만 : 8.6점	등급 비율(%) 실적(km) 평가기준규모(km) A사실적(km) B사실적(km)	160.00 4.80 3.00 4.80 0.00	
		나.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최근 3년 간 실적누계금액 의 합계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 × 0.7 × 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업종별 최근 3 년간 실적 ÷ (추정가격 × 3.0 × 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 점) ※ 공동수급체별 시공비율 산식 별첨	점수 토목 점수 상하수도 점수	0.57 0.35 0.21	
3) 경영상태평가	【15】	별첨(2)점수 × 15/21				15.00
4) 신인도 평가	【±1.2】	별첨(3)점수 × 40/100				0.00
2. 입찰가격평가	【50】	별첨				45.00
3.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10】	배정한도 적용				10.00
4. 자재및인력조달 적정성평가	【10】	별첨				10.00

실적계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	시공비율	추정가격	차등계수	업종평가비율 (환산)	실적계수
토목	A사	10,000,000,000	0.60	6,600,000,000	3.0	0.60	0.84 ≒ 0.84
상하수도	C사	6,000,000,000	0.40	6,600,000,000	3.0	0.40	0.76 ≒ 0.76

업종별 점수

업종	실적계수	업종평가비율(환산)	배점	점수
토목	0.84	0.60	0.70	0.35
상하수도	0.76	0.40	0.70	0.21
계				0.57

직접 입력해야하는 부분

2-1-4 5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미만 시공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한 공사 (50미만 20억 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4,00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출기초				점수
총 점	100					110.00
1.수행능력 평가	30					30.00
1) 시공경험	【15】	가.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 위 및 인정규모에 해 당되는 공사실적 합 계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점수	13.50	15.00
			A: 100%이상 : 13.5점 B: 70%이상 : 12.2점 C: 40%이상 : 10.8점 D: 20%이상 : 9.5점 E: 20%미만 : 8.1점	등급 비율(%) 실적(km) 평가기준규모(km) A사실적(km) B사실적(km)	A 150.00 3.00 2.00 3.00 0.00	
		나.당해공사와 동일 한 평가대상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 금액의 합계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 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추정가격×3.0×업종평 가비율) • 실적계수=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추정가격×3.0×업종평 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 공동수급체별 시공비율 산 식 별첨	점수 토목 점수 토공 점수 상하수도 점수 조경식재 점수	1.50 0.75 0.21 0.43 0.11	
2)경영상태평가	【15】	별 점				15.00
2.입찰가격평가	【70】	별 점				65.00
3.기타당해공사 수행능력상결격 여부	【△10점】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 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 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 상 미달하는 자				0.00

실적계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	시공비율	추정가격	차등계수	업종평가비율 (환산)	실적계수
토목	A사	6,000,000,000	0.30	4,000,000,000	3.0	0.50	1.00 ≒ 1.00
토공	B사	2,000,000,000	0.20	4,000,000,000	3.0	0.14	1.17 ≒ 1.00
상하수도	C사	5,000,000,000	0.40	4,000,000,000	3.0	0.29	1.46 ≒ 1.00
조경식재	D사	1,000,000,000	0.10	4,000,000,000	3.0	0.07	1.17 ≒ 1.00

업종별 점수

업종	실적계수	업종평가비율(환산)	배점	점수
토목	1.00	0.50	1.50	0.75
토공	1.00	0.14	1.50	0.21
상하수도	1.00	0.29	1.50	0.43
조경식재	1.00	0.07	1.50	0.11
				-
계				1.50

직접 입력해야하는 부분

2-1-5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이상 시공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부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 (100억미만 50억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6,60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출기초				점수
총 점	100					94.78
1.수행능력 평가	30					29.78
1)시공경험평가	【15】	나.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최근 3년 간 실적누계금액 의 합계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 × 15 × 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업종별 최근 3 년간 실적 ÷ (추정가격 × 3.0 × 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 점) ※ 공동수급체별 시공비율 산식 별첨	점수 A사(토목) B사(토공) C사(상하수도)	13.58 7.58 3.00 3.00	13.58
2)경영상태평가	【15】	별첨(2)점수 × 15/21				15
4)신인도 평가	【±1.2】	별첨(3)점수 × 40/100				1.2
2. 입찰가격평가	【50】	별첨				45
3.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10】	배점한도 적용				10
4. 자재및인력조달 적정성평가	【10】	별첨				10

실적계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	시공비율	추정가격	차등계수	업종평가비율 (환산)	실적계수
토목	A사	10,000,000,000	0.60	6,600,000,000	3.0	0.60	0.84 ≒ 0.84
토공	B사	5,000,000,000	0.20	6,600,000,000	3.0	0.20	1.26 ≒ 1.00
상하수도	C사	7,000,000,000	0.20	6,600,000,000	3.0	0.20	1.77 ≒ 1.00
							≒
							≒

업종별 점수

업종	실적계수	업종평가비율(환산)	배점	점수
토목	0.84	0.60	15.00	7.58
토공	1.00	0.20	15.00	3.00
상하수도	1.00	0.20	15.00	3.00
계				13.58

직접입력해야하는 부분

2-2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공사

2-2-1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미만 시공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 (100억 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11,00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출기초				점수
총 점	100					92.16
1.수행능력 평가	44					43.16
	【14】	나.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최근 3년 간 실적누계금액 의 합계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 × 1.5×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업종별 최근 3 년간 실적÷(추정가격× 3.1×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 점) ※ 공동수급체별 시공비율 산식 별첨	점수 A사(토목) 6.16 B사(토공) 2.00 C사(상하수도) 2.87 D사(조경식재) 1.00	12.03	12.03
3)기술능력점수	【15】	별첨(1)점수 × 15/35				15
3)경영상태평가	【15】	별첨(2)점수 × 15/35				15
4)신인도 평가	【±1.2】	별첨(3)점수 × 40/100				1.13
2.입찰가격평가	【30】	별첨				23
3.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12】	별첨				12
4.자재및인력조달 적정성평가	【14】	별첨				14

실적계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	시공비율	추정가격	차등계수	업종평가비율 (환산)	실적계수	
토목	A사	15,000,000,000	0.30	11,000,000,000	3.1	0.50	0.88	≒ 0.88
토공	B사	5,000,000,000	0.20	11,000,000,000	3.1	0.14	1.03	≒ 1.00
상하수도	C사	7,000,000,000	0.40	11,000,000,000	3.1	0.29	0.72	≒ 0.72
조경식재	D사	3,000,000,000	0.10	11,000,000,000	3.1	0.07	1.23	≒ 1.00
						-		

업종별 점수

업종	실적계수	업종평가비율(환산)	배점	점수
토목	0.88	0.50	14.00	6.16
조경	1.00	0.14	14.00	2.00
상하수도	0.72	0.29	14.00	2.87
조경식재	1.00	0.07	14.00	1.00
	-	-		-
계				12.03

직접입력해야하는 부분

2-2-2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이상 시공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부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 (100억 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11,00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출기초				점수
총 점	100					91.64
1.수행능력 평가	44					40.64
	【14】	나.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 상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 계금액의 합계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 × 1.5 × 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업종별 최근 3년 간 실적 ÷ (추정가격 × 3.1 × 업 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 공동수급체별 시공비율 산 식 별첨	점수 A사(토목) 6.16 B사(토공) 2.05 C사(조경식재) 1.23	9.44	
3)기술능력 점수	【15】	별첨(1)점수 × 15/35				15
3)경영상태 평가	【15】	별첨(2)점수 × 15/35				15
4)신인도 평가	【±1.2】	별첨(3)점수 × 40/100				1.2
2.입찰가격 평가	【30】	별첨				25
3.하도급관 리계획 적정 성 평가	【12】	별첨				12
4.자재및인 력조달 적정성평가	【14】	별첨				14

실적계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	시공비율	추정가격	차등계수	업종평가비율 (환산)	실적계수
토목	A사	15,000,000,000	0.70	11,000,000,000	3.1	0.70	0.63 ≒ 0.63
토공	B사	5,000,000,000	0.20	11,000,000,000	3.1	0.20	0.73 ≒ 0.73
조경식재	C사	3,000,000,000	0.10	11,000,000,000	3.1	0.10	0.88 ≒ 0.88

업종별 점수

업종	실적계수	업종평가비율(환산)	배점	점수
토목	0.63	0.70	14.00	6.16
토공	0.73	0.20	14.00	2.05
조경식재	0.88	0.10	14.00	1.23
계				9.44

직접입력해야하는 부분

2-2-3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미만 시공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 (100억미만 50억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6,60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 출 기 초				점수
총 점	100					95.00
1. 수행능력 평가	30					30.00
1)시공경험평가	【15】	나.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최근 3년 간 실적누계금액 의 합계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 1.5×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업종별 최근 3 년간 실적÷(추정가격× 3.0×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 점) ※ 공동수급체별 시공비율 산식 별첨	점수 A사(토목) 7.50 B사(토공) 2.27 C사(도장) 0.58 D사(포장) 3.03 E사(철콘) 1.14	14.52	14.52
2)경영상태평가	【15】	별 첨(2)점수 × 15/21				15
4)신인도 평가	【±1.2】	별 첨(3)점수 × 40/100				0.48
2. 입찰가격평가	【50】	별 첨				45
3.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10】	배점한도 적용				10
4. 자재및인력조달 적정성평가	【10】	별 첨				10

실적계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	시공비율	추정가격	차등계수	업종평가비율 (환산)	실적계수
토목	A사	10,000,000,000	0.20	6,600,000,000	3.0	0.50	1.01 ≒ 1.00
토공	B사	3,000,000,000	0.20	6,600,000,000	3.0	0.15	0.98 ≒ 0.98
도장	C사	1,000,000,000	0.05	6,600,000,000	3.0	0.04	1.31 ≒ 1.00
포장	D사	4,000,000,000	0.30	6,600,000,000	3.0	0.23	0.88 ≒ 0.88
철근	E사	1,500,000,000	0.10	6,600,000,000	3.0	0.08	0.98 ≒ 0.98

업종별 점수

업종	실적계수	업종평가비율(환산)	배점	점수
토목	1.00	0.50	15.00	7.50
토공	0.98	0.15	15.00	2.27
포장	1.00	0.04	15.00	0.58
조경식재	0.88	0.23	15.00	3.03
철근	0.98	0.08	15.00	1.14
계				14.52

직접입력해야하는 부분

2-2-4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이상 시공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부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 (100억미만 50억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6,60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출기초				점수
총 점	100					94.78
1.수행능력 평가	30					29.78
1)시공경험평가	【15】	나.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최근 3년 간 실적누계금액 의 합계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 × 15 × 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업종별 최근 3 년간 실적 ÷ (추정가격 × 3.0 × 업종평가비율) (단, 실적계수 상한은 1 점) ※ 공동수급체별 시공비율 산식 별첨	점수 A사(토목) B사(토공) C사(상하수도)	13.58 7.58 3.00 3.00	13.58
2)경영상태평가	【15】	별첨(2)점수 × 15/21				15
4)신인도 평가	【±1.2】	별첨(3)점수 × 40/100				1.2
2. 입찰가격평가	【50】	별첨				45
3.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10】	배점한도 적용				10
4.자재및인력조달 적정성평가	【10】	별첨				10

실적계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	시공비율	추정가격	차등계수	업종평가비율 (환산)	실적계수
토목	A사	10,000,000,000	0.60	6,600,000,000	3.0	0.60	0.84 ≒ 0.84
토공	B사	5,000,000,000	0.20	6,600,000,000	3.0	0.20	1.26 ≒ 1.00
상하수도	C사	7,000,000,000	0.20	6,600,000,000	3.0	0.20	1.77 ≒ 1.00
							≒
							≒

업종별 점수

업종	실적계수	업종평가비율(환산)	배점	점수
토목	0.84	0.60	15.00	7.58
토공	1.00	0.20	15.00	3.00
상하수도	1.00	0.20	15.00	3.00
계				13.58

직접입력해야하는 부분

2-2-5 50억원 미만 20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미만 시공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 (50억미만 20억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4,40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출기초		점수	
총 점	100			95.00	
1.수행능력평가	30			30.00	
1)시공경험평가		별첨(1)		15.00	
		나. 구성원 (전문건설업체)	가. 주계약자 (종합건설업체)	A사(토목)	7.50
			B사(토공)	1.88	
			C사(상하수도)	1.88	
			D사(포장)	2.81	
			E사(철근)	0.94	
2)경영상태평가	【15】	별첨(2)		15.00	
2.입찰가격평가	【70】	별첨(3)		65.00	
3.기타당해공사 수행능력상결격 여부	(△10)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 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 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		해당없음 0.00	

업종별 평가점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A)	추정가격	추정가격*업종평가금액(B)	시공비율	업종평가비율(환산)	실적비율 A/B(100%)	등급	점수	점수(환산)
토목	주계약자	A사	5,000,000,000	4,400,000,000	2,200,000,000	0.20	0.50	227.27	A	15.00	7.50
토공 상하수도 포장 철근	구성원	B사	1,000,000,000	4,400,000,000	550,000,000	0.20	0.13	181.82	A	15.00	1.88
		C사	700,000,000	4,400,000,000	550,000,000	0.20	0.13	127.27	A	15.00	1.88
		D사	1,000,000,000	4,400,000,000	825,000,000	0.30	0.19	121.21	A	15.00	2.81
		E사	500,000,000	4,400,000,000	275,000,000	0.10	0.06	181.82	A	15.00	0.94
		계				4,400,000,000					

가.주계약자 (종합공사)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200%이상 : 15.0점
	B:150%이상 : 13.0점
	C:100%이상 : 11.0점
	D: 100%미만 : 9.0점

나.구성원 (전문공사)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100%이상 : 15.0점
	B: 75%이상 : 13.0점
	C: 60%이상 : 11.0점
	D: 60%미만 : 9.0점

직접입력해야하는 부분

2-2-6 50억원 미만 20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이상 시공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부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 (50억미만 20억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4,40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출기초		점수
총 점	100			93.40
1.수행능력평가	30			28.40
1)시공경험평가		별첨(1)		13.40
		가. 주계약자 (종합건설업체)	A사(토목)	7.80
		나. 구성원 (전문건설업체)	B사(토공)	3.00
			C사(상하수도)	2.60
2)경영상태평가	【15】	별첨(2)		15.00
2.입찰가격평가	【70】	별첨(3)		65.00
3.기타당해공사 수행능력상결격 여부	(△10)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 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 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		해당없음 0.00

업종별 평가점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A)	추정가격	추정가격*업종 평가금액(B)	시공 비율	업종평가 비율(환산)	실적비율 A/B(100%)	등급	배점	점수
토목	주계약자	A사	5,000,000,000	4,400,000,000	2,640,000,000	0.60	0.60	189.39	B	13.00	7.80
토공	구성원	B사	1,000,000,000	4,400,000,000	880,000,000	0.20	0.20	113.64	A	15.00	3.00
		C사	700,000,000	4,400,000,000	880,000,000	0.20	0.20	79.55	B	13.00	2.60
계					4,400,000,000						13.40

가.주계약자 (종합공사)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200%이상 : 15.0점
	B:150%이상 : 13.0점
	C:100%이상 : 11.0점
	D: 100%미만 : 9.0점

나.구성원 (전문공사)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100%이상 : 15.0점
	B: 75%이상 : 13.0점
	C: 60%이상 : 11.0점
	D: 60%미만 : 9.0점

직접입력해야하는 부분

2-2-7 20억원 미만 10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미만 시공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 (50억미만 20억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4,40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출기초		점수
총 점	100			95.00
1.수행능력평가	30			30.00
1)시공경험평가		별첨(1)		15.00
		가. 주계약자 (종합건설업체)	A사(토목)	7.50
		나. 구성원 (전문건설업체)	B사(토공)	1.88
			C사(상하수도)	1.88
			D사(포장)	2.81
			E사(철근)	0.94
2)경영상태평가	【15】	별첨(2)		15.00
2.입찰가격평가	【70】	별첨(3)		65.00
3.기타당해공사 수행능력상결격 여부	(△10)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 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 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		해당없음 0.00

업종별 평가점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A)	추정가격	추정가격*업종평가금액(B)	시공비율	업종평가비율(환산)	실적비율 A/B(100%)	등급	점수	점수(환산)
토목	주계약자	A사	5,000,000,000	4,400,000,000	2,200,000,000	0.20	0.50	227.27	A	15.00	7.50
토공 상하수도 포장 철근	구성원	B사	1,000,000,000	4,400,000,000	550,000,000	0.20	0.13	181.82	A	15.00	1.88
		C사	700,000,000	4,400,000,000	550,000,000	0.20	0.13	127.27	A	15.00	1.88
		D사	1,000,000,000	4,400,000,000	825,000,000	0.30	0.19	121.21	A	15.00	2.81
		E사	500,000,000	4,400,000,000	275,000,000	0.10	0.06	181.82	A	15.00	0.94
		계				4,400,000,000					

가.주계약자 (종합공사)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200%이상 : 15.0점
	B:150%이상 : 13.0점
	C:100%이상 : 11.0점
	D: 100%미만 : 9.0점

나.구성원 (전문공사)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100%이상 : 15.0점
	B: 75%이상 : 13.0점
	C: 60%이상 : 11.0점
	D: 60%미만 : 9.0점

직접입력해야하는 부분

2-2-8 20억원 미만 10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이상 시공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부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 (50억미만 20억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1,50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출기초		점수
총 점	100			93.40
1.수행능력평가	30			28.40
1)시공경험평가		별첨(1)		13.40
		가. 주계약자 (종합건설업체)	A사(토목)	7.80
		나. 구성원 (전문건설업체)	B사(토공)	3.00
			C사(상하수도)	2.60
				0.00
		0.00		
2)경영상태평가	【15】	별첨(2)		15.00
2.입찰가격평가	【70】	별첨(3)		65.00
3.기타당해공사 수행능력상결격 여부	(△10)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 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 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 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		해당없음 0.00

업종별 평가점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A)	추정가격	추정가격*업종평가금액(B)	시공비율	업종평가비율(환산)	실적비율 A/B(100%)	등급	배점	점수
토목	주계약자	A사	1,500,000,000	1,500,000,000	900,000,000	0.60	0.60	166.67	B	13.00	7.80
토공	구성원	B사	300,000,000	1,500,000,000	300,000,000	0.20	0.20	100.00	A	15.00	3.00
		C사	250,000,000	1,500,000,000	300,000,000	0.20	0.20	83.33	B	13.00	2.60
상하수도											
계					1,500,000,000						13.40

가.주계약자 (종합공사)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180%이상 : 15.0점
	B:160%이상 : 13.0점
	C:140%이상 : 11.0점
	D:140%미만 : 9.0점

나.구성원 (전문공사)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100%이상 : 15.0점
	B: 75%이상 : 13.0점
	C: 60%이상 : 11.0점
	D: 60%미만 : 9.0점

직접입력해야하는 부분

2-2-9 10억원 미만 3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미만 시공 - 4년 미만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 (10억미만 3억 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80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출기초		점수
총 점	100			95.00
1.수행능력평가	20			20.00
1)시공경험평가	【10】	별첨(1)		10.00
		가. 주계약자 (종합건설업체)	A사(토목)	5.00
		나. 구성원 (전문건설업체)	B사(토공)	1.25
			C사(상하수도)	1.25
			D사(포장)	1.88
			E사(철근)	0.63
2)경영상태평가	【10】	별첨(2)		10.00
3)접근성 평가	【+0.5】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 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추정가격 5억원미만공사에 한하여 적용)		0.00
2.입찰가격평가	【80】	별첨(3)		75.00
3.기타당해공사 수행능력상결격 여부	(△10)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		해당없음 0.00

업종별 평가점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A)	추정가격	추정가격*업종평가금액(B)	시공비율	업종평가비율(환산)	실적비율 A/B(100%)	등급	점수	점수(환산)
토목	주계약자	A사	300,000,000	800,000,000	400,000,000	0.20	0.50	75.00	A	10.00	5.00
토공 상하수도 포장 철콘	구성원	B사	100,000,000	800,000,000	100,000,000	0.20	0.13	100.00	A	10.00	1.25
		C사	100,000,000	800,000,000	100,000,000	0.20	0.13	100.00	A	10.00	1.25
		D사	100,000,000	800,000,000	150,000,000	0.30	0.19	66.67	A	10.00	1.88
		E사	100,000,000	800,000,000	50,000,000	0.10	0.06	200.00	A	10.00	0.63
		계				800,000,000					

주계약자 (종합공사), 구성원(전문공사) 공통

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70%이상 : 10.0점
	B:60%이상 : 9.0점
	C:50%이상 : 7.0점
	D:50%미만 : 6.0점

나.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60%이상 : 10.0점
	B:50%이상 : 9.0점
	C:40%이상 : 7.0점
	D:40%미만 : 6.0점

 직접입력해야하는 부분

2-2-10 10억원 미만 3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미만 시공 - 4년 이상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 (10억미만 3억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80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출기초		점수	
총 점	100			95.00	
1.수행능력평가	20			20.00	
1)시공경험평가	【10】	별첨(1)		9.81	9.81
		가. 주계약자 (종합건설업체)	A사(토목)	5.00	
		나. 구성원 (전문건설업체)	B사(토공)	1.25	
			C사(상하수도)	1.25	
			D사(포장)	1.69	
			E사(철근)	0.63	
2)경영상태평가	【10】	별첨(2)		10.00	
3)접근성 평가	【+0.5】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 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추정가격 5억원미만공사에 한하여 적용)		0.19	
2.입찰가격평가	【80】	별첨(3)		75.00	
3.기타당해공사 수행능력상결격 여부	(△10)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		해당없음 0.00	

업종별 평가점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A)	추정가격	추정가격*업종 평가금액(B)	시공 비율	업종평가 비율(환산)	실적비율 A/B(100%)	등급	점수	점수 (환산)	
토목	주계약자	A사	300,000,000	800,000,000	400,000,000	0.20	0.50	75.00	A	10.00	5.00	
토공	구성원	B사	100,000,000	800,000,000	100,000,000	0.20	0.13	100.00	A	10.00	1.25	
		상하수도	C사	100,000,000	800,000,000	100,000,000	0.20	0.13	100.00	A	10.00	1.25
		포장	D사	100,000,000	800,000,000	150,000,000	0.30	0.19	66.67	B	9.00	1.69
		철근	E사	100,000,000	800,000,000	50,000,000	0.10	0.06	200.00	A	10.00	0.63
계				800,000,000							9.81	

주계약자 (종합공사), 구성원(전문공사) 공통

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70%이상 : 10.0점
	B:60%이상 : 9.0점
	C:50%이상 : 7.0점
	D:50%미만 : 6.0점

나.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60%이상 : 10.0점
	B:50%이상 : 9.0점
	C:40%이상 : 7.0점
	D:40%미만 : 6.0점

 직접입력해야하는 부분

2-2-11 10억원 미만 3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이상 시공 - 4년 미만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 (10억미만 3억 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80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출기초		점수
총 점	100			95.00
1.수행능력평가	20			20.00
1)시공경험평가	【10】	별첨(1)		10.00
		가. 주계약자 (종합건설업체)	A사(토목)	6.00
		나. 구성원 (전문건설업체)	B사(토공)	2.00
			C사(상하수도)	2.00
				0.00
		0.00		
2)경영상태평가	【10】	별첨(2)		10.00
3)접근성 평가	【+0.5】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 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추정가격 5억원미만공사에 한하여 적용)		0.00
2.입찰가격평가	【80】	별첨(3)		75.00
3.기타당해공사 수행능력상결격 여부	(△10)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		해당없음 0.00

업종별 평가점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A)	추정가격	추정가격*업종 평가금액(B)	시공 비율	업종평가 비율(환산)	실적비율 A/B(100%)	등급	점수	점수 (환산)
토목	주계약자	A사	300,000,000	800,000,000	480,000,000	0.60	0.60	62.50	A	10.00	6.00
토공	구성원	B사	100,000,000	800,000,000	160,000,000	0.20	0.20	62.50	A	10.00	2.00
상하수도		C사	100,000,000	800,000,000	160,000,000	0.20	0.20	62.50	A	10.00	2.00
계					800,000,000						10.00

주계약자 (종합공사), 구성원(전문공사) 공통

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70%이상 : 10.0점
	B:60%이상 : 9.0점
	C:50%이상 : 7.0점
	D:50%미만 : 6.0점

나.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60%이상 : 10.0점
	B:50%이상 : 9.0점
	C:40%이상 : 7.0점
	D:40%미만 : 6.0점

직접입력해야하는 부분

2-2-12 10억원 미만 3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이상 시공 - 4년 이상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부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 (10억미만 3억 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80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출기초		점수
총 점	100			94.50
1.수행능력평가	20			19.50
1)시공경험평가	【10】	별첨(1)		9.00
		가. 주계약자 (종합건설업체)	A사(토목)	5.40
		나. 구성원 (전문건설업체)	B사(토공)	1.80
			C사(상하수도)	1.80
				0.00
		0.00		
2)경영상태평가	【10】	별첨(2)		10.00
3)접근성 평가	【+0.5】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 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추정가격 5억원미만공사에 한하여 적용)		0.50
2.입찰가격평가	【80】	별첨(3)		75.00
3.기타당해공사 수행능력상결격 여부	(△10)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		해당없음 0.00

업종별 평가점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A)	추정가격	추정가격*업종 평가금액(B)	시공 비율	업종평가 비율(환산)	실적비율 A/B(100%)	등급	점수	점수 (환산)
토목	주계약자	A사	300,000,000	800,000,000	480,000,000	0.60	0.60	62.50	B	9.00	5.40
토공	구성원	B사	100,000,000	800,000,000	160,000,000	0.20	0.20	62.50	B	9.00	1.80
		C사	100,000,000	800,000,000	160,000,000	0.20	0.20	62.50	B	9.00	1.80
상하수도											
계					800,000,000						9.00

주계약자 (종합공사), 구성원(전문공사) 공통

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70%이상 : 10.0점
	B:60%이상 : 9.0점
	C:50%이상 : 7.0점
	D:50%미만 : 6.0점

나.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60%이상 : 10.0점
	B:50%이상 : 9.0점
	C:40%이상 : 7.0점
	D:40%미만 : 6.0점

 직접입력해야하는 부분

2-2-13 3억원 미만 2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미만 시공 - 4년 미만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 (3억미만 2억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25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 출 기 초		점수
총 점	100			95.00
1.수행능력평가	10			10.00
1)시공경험평가	【5】	별 첨 (1)		5.00
		가. 주계약자 (종합건설업체)	A사(토목)	2.50
		나. 구성원 (전문건설업체)	B사(토공)	0.63
			C사(상하수도)	0.63
			D사(포장)	0.94
			E사(철콘)	0.31
2)경영상태평가	【5】	별 첨 (2)		5.00
3)접근성 평가	【+0.5】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 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 (추정가격 5억원미만공사에 한하여 적용)		0.00
2.입찰가격평가	【90】	별 첨 (3)		85.00
3.기타당해공사 수행능력상결격 여부	(△10)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		해당없음 0.00

업종별 평가점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A)	추정가격	추정가격*업종 평가금액(B)	시공 비율	업종평가 비율(환산)	실적비율 A/B(100%)	등급	점수	점수 (환산)
토목	주계약자	A사	70,000,000	250,000,000	125,000,000	0.20	0.50	56.00	A	5.00	2.50
토공 상하수도 포장 철근	구성원	B사	100,000,000	250,000,000	31,250,000	0.20	0.13	320.00	A	5.00	0.63
		C사	100,000,000	250,000,000	31,250,000	0.20	0.13	320.00	A	5.00	0.63
		D사	100,000,000	250,000,000	46,875,000	0.30	0.19	213.33	A	5.00	0.94
		E사	100,000,000	250,000,000	15,625,000	0.10	0.06	640.00	A	5.00	0.31
		계				250,000,000					

주계약자 (종합공사), 구성원(전문공사) 공통

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60%이상 : 5.0점
	B:50%이상 : 4.0점
	C:40%이상 : 3.0점
	D:40%미만 : 2.0점

나.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50%이상 : 5.0점
	B:40%이상 : 4.0점
	C:30%이상 : 3.0점
	D:30%미만 : 2.0점

직접입력해야하는 부분

2-2-14 3억원 미만 2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미만 시공 - 4년 이상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 (3억미만 2억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25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출기초		점수
총 점	100			95.00
1.수행능력평가	10			10.00
1)시공경험평가	【5】	별첨(1)		4.50
		가. 주계약자 (종합건설업체)	A사(토목)	2.00
		나. 구성원 (전문건설업체)	B사(토공)	0.63
			C사(상하수도)	0.63
			D사(포장)	0.94
			E사(철근)	0.31
2)경영상태평가	【5】	별첨(2)		5.00
3)접근성 평가	【+0.5】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 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추정가격 5억원미만공사에 한하여 적용)		0.50
2.입찰가격평가	【90】	별첨(3)		85.00
3.기타당해공사 수행능력상결격 여부	(△10)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		해당없음 0.00

업종별 평가점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A)	추정가격	추정가격*업종 평가금액(B)	시공 비율	업종평가 비율(환산)	실적비율 A/B(100%)	등급	점수	점수 (환산)
토목	주계약자	A사	70,000,000	250,000,000	125,000,000	0.20	0.50	56.00	B	4.00	2.00
토공 상하수도 포장 철근	구성원	B사	100,000,000	250,000,000	31,250,000	0.20	0.13	320.00	A	5.00	0.63
		C사	100,000,000	250,000,000	31,250,000	0.20	0.13	320.00	A	5.00	0.63
		D사	100,000,000	250,000,000	46,875,000	0.30	0.19	213.33	A	5.00	0.94
		E사	100,000,000	250,000,000	15,625,000	0.10	0.06	640.00	A	5.00	0.31
계					250,000,000						4.50

주계약자 (종합공사), 구성원(전문공사) 공통

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60%이상 : 5.0점
	B:50%이상 : 4.0점
	C:40%이상 : 3.0점
	D:40%미만 : 2.0점

나.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50%이상 : 5.0점
	B:40%이상 : 4.0점
	C:30%이상 : 3.0점
	D:30%미만 : 2.0점

직접입력해야하는 부분

2-2-15 3억원 미만 2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이상 시공 - 4년 미만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부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 (3억미만 2억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25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출기초		점수
총 점	100			94.90
1.수행능력평가	10			9.90
1)시공경험평가	【5】	별첨(1)		4.40
		가. 주계약자 (종합건설업체)	A사(토목)	2.40
		나. 구성원 (전문건설업체)	B사(토공)	1.00
			C사(상하수도)	1.00
			D사(포장)	0.00
			E사(철근)	0.00
2)경영상태평가	【5】	별첨(2)		5.00
3)접근성 평가	【+0.5】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 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추정가격 5억원미만공사에 한하여 적용)		0.50
2.입찰가격평가	【90】	별첨(3)		85.00
3.기타당해공사 수행능력상결격 여부	(△10)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 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		해당없음 0.00

업종별 평가점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A)	추정가격	추정가격*업종 평가금액(B)	시공 비율	업종평가 비율(환산)	실적비율 A/B(100%)	등급	점수	점수 (환산)
토목	주계약자	A사	70,000,000	250,000,000	150,000,000	0.60	0.60	46.67	B	4.00	2.40
토공	구성원	B사	100,000,000	250,000,000	50,000,000	0.20	0.20	200.00	A	5.00	1.00
		C사	100,000,000	250,000,000	50,000,000	0.20	0.20	200.00	A	5.00	1.00
상하수도											
계					250,000,000						4.40

주계약자 (종합공사), 구성원(전문공사) 공통

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60%이상 : 5.0점
	B:50%이상 : 4.0점
	C:40%이상 : 3.0점
	D:40%미만 : 2.0점

나.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50%이상 : 5.0점
	B:40%이상 : 4.0점
	C:30%이상 : 3.0점
	D:30%미만 : 2.0점

 직접입력해야하는 부분

2-2-16 3억원 미만 2억원이상 종합공사 : 주계약자 50% 이상 시공 - 4년 이상

적격심사내역

심사순위	1	적격여부	부적격	시공실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 공사 (3억미만 2억이상 종합공사)	
입찰건명				입찰일자	2009.2.9
업체명		대표자		추정가격	250,000,000

심사항목	기준 평점	산출기초		점수
총 점	100			94.30
1.수행능력평가	10			9.30
1)시공경험평가	【5】	별첨(1)		3.80
		가. 주계약자 (종합건설업체)	A사(토목)	1.80
		나. 구성원 (전문건설업체)	B사(토공)	1.00
			C사(상하수도)	1.00
			D사(포장)	0.00
E사(철근)	0.00			
2)경영상태평가	【5】	별첨(2)		5.00
3)접근성 평가	【+0.5】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내 군 또는 자치구는 평가에서 제외) 지역 및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특별시·광역시·도 발주공사 포함)는 수행능력점수에 +0.5점을 가산하여 평가(추정가격 5억원미만공사에 한하여 적용)		0.50
2.입찰가격평가	【90】	별첨(3)		85.00
3.기타당해공사 수행능력상결격 여부	(△10)	기술인력이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		해당없음 0.00

업종별 평가점수

업종	공동수급체		최근3년간실적(A)	추정가격	추정가격*업종평가금액(B)	시공비율	업종평가비율(환산)	실적비율 A/B(100%)	등급	점수	점수(환산)
토목	주계약자	A사	70,000,000	250,000,000	150,000,000	0.60	0.60	46.67	C	3.00	1.80
토공	구성원	B사	100,000,000	250,000,000	50,000,000	0.20	0.20	200.00	A	5.00	1.00
		C사	100,000,000	250,000,000	50,000,000	0.20	0.20	200.00	A	5.00	1.00
D사											
E사											
상하수도											
계					250,000,000					3.80	

주계약자 (종합공사), 구성원(전문공사) 공통

가.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60%이상 : 5.0점
	B:50%이상 : 4.0점
	C:40%이상 : 3.0점
	D:40%미만 : 2.0점

나.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A:50%이상 : 5.0점
	B:40%이상 : 4.0점
	C:30%이상 : 3.0점
	D:30%미만 : 2.0점

직접입력해야하는 부분